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08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이춘석
이성윤 · 김윤덕 · 서영석
정동영 · 안호영 · 이원택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모빌리티 · 인공지능(AI) ·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 · 저장 · 활용 전주기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첨단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 로봇 산업의 집적 · 실증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을 미래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사업 시행 특례)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 수소특화산업단지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사업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운영 등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이하 “그린수소”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이하 “생산촉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생산촉진지역에 설치된 수전해 장치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촉진지역에서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생산촉진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이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전해 기기 설비 투자 지원

2. 생산촉진지역 내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소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⑤ 그 밖에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4(그린수소 소비 촉진 지원) ① 기후에너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생산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부문 우선 사용 촉진
2. 수소출하소와 수소 사용처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 지원
3. 수소를 활용한 트럭·버스·트램·철도차량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실증

② 그 밖에 그린수소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5(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그린수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전해 플랜트의 설계·제조·설치·운영에 관한 인증 및 인허가 통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에서 수전해 플랜트의 안전성·기술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내 수전해 플랜트의 신속한 인허가 및 인증 절차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수소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수소인공지능시티의 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등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으며, 도시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도시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AI기반시설”이라 한다)의 통합 운영을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만금 지역에 수소인공지능시티(이하 이 조에서 “수소AI시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소AI시티의 도시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고 AI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는 새만금 지역이 수소AI시티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또는 AI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도시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AI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전문인력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도시데이터와 AI기반시설의 종류 및 통합 관리·운영하는 업무의 범위, 제5항에 따른 위탁대상 기관 또는 법인, 위탁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편 제2장 제3절에 제32조2부터 제3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중점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중점산업으로 본다.

제32조의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

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본다.

제32조의4(에너지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자립도시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

별회계

④ 도지사는 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5(지역 에너지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생산·공급되는 전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같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2조의7(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권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해당하는 재생

에너지에 관한 발전사업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또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 중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8(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의9(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의10(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11(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대하여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의12(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 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활

성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 제3장 제1절에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이하 “지능형 로봇”이라 한다)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3(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실증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이하 “실증특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역을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2. 지능형 로봇 제조 공장 등 로봇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 ② 도지사는 실증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실증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실증특구 지정·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4(실증특구 내 자율이동형 로봇의 운행 및 실증 특례)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중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서 실외이동로봇, 무인지게차, 자율운반로봇, 주차로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봇(이하 이 조에서 “자율이동형 로봇”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특구 내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 또는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 한하여 보도 또는 도로에서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 또는 실증할 수 있다.

제41조의5(실증특구 내 개인정보보호 처리 특례) ① 실증특구에서 지능형 로봇의 인지·판단 및 인간과의 상호작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는 로봇의 자율주행, 객체 인식, 음성 인식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포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표정, 음성 등 개인의 행동·생체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이루어질 것
2. 연구·개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할 것
3.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출 것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증특구 내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제41조의6(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 지원 특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능형 로봇 또는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제품(이하 “실증제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매를 권고하거나 구매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실증제품의 범위, 우선구매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7(로봇 실증제품의 민간 구매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실증제품의 민간 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도입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로봇산업의 조기 시장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비율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8(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농업기기, 첨단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산업(이하 “피지컬AI산업”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피지컬AI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및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피지컬AI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기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퍼지컬AI산업의 집적화,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업·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9(퍼지컬 인공지능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 및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퍼지컬AI산업의 시험·검증·인증·표준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험·검사장비, 전문인력, 품질관리체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센터는 인증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가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안전성·신뢰성 및 현장적합성을 시험·평가하고 검증 또는 인증할 수 있다.

1. AI 기반 이동체 및 자율주행 농·기계 등
2. 지능형 로봇 및 스마트제조 설비
3. AI 기반 에너지·환경 제어 시스템
4.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 통합제어 시스템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융합 제품·서비스

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검증·인증 기준 및 방법, 인증표시, 수수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데이터 제공 및 기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10(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시스템을 검증·인증한 경우
3. 제41조의9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도조례로 정하는 검증·인증 기준 또는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을 수행한 경우
5. 검증데이터의 조작, 허위보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검증·인증의 공정성·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절차, 청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

례로 정한다.

제41조의11(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단위 클러스터(이하 “인공지능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시설 및 연계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제41조의12(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전

북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전북자치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전북자치도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13(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14(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15(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이하 “인공지능데이터뱅크”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16(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

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1조의17(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 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민 행정업무 및 내부 행정업

무에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정성·투명성·보안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18(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41조의19(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북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 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 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국제 품질 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 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20(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 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41조의21(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2(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3(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대기·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이하 “녹색융합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및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저감기술과 함께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분진, 도로 재비산먼지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비배기 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계형 실증사업
4.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송·교통 부문 연계형 융합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증
5. 비배기 미세먼지의 발생·이동·노출 특성 분석을 위한 측정·분석·검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6. 대기질 측정·분석·검증을 위한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구축
7. 청정대기산업 및 친환경 자동차 연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집적화 및 이전·입주 지원

8.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종료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및 관련 기업·기관의 이전·입주 지원
9.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환경·에너지 분야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10. 기타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대기산업과 탄소중립 및 자원 순환형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의24(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 내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법」 및 관련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25(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 ① 도지사는 로봇 및 AI 학습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영상 및 음성의 원본 데이터(비식별 조치 전 데이

터를 말한다)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승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공유재산 처분기준의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현물출자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규모 투자유치의 범위 및 요건
2. 국유·공유 재산 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수의계약, 장기대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4. 투자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환매권 행사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는 공공성·투명성 및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3(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구 내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 적용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특례의 부여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신청 및 검토,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에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2(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사업 시행 특례)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 수소특화산업단지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사업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u> <u>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u> <u>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u> <u>3.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운영 등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
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
산한 수소(이하 “그린수소”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수
소생산촉진지역(이하 “수소생
산촉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
업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수소생산촉진지역에 설치된 수
전해 장치에 대해서는 전력시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계
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
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생산촉진지역에서 그린수

<신 설>

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생산촉진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이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전해 기기 설비 투자 지원

2. 수소생산촉진지역 내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소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⑤ 그 밖에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4(그린수소 소비 촉진 지원) ① 기후에너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생

<신 설>

산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부문 우선 사용 촉진

2. 수소출하소와 수소 사용처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 지원

3. 수소를 활용한 트럭·버스·트램·철도차량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실증

② 그 밖에 그린수소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5(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그린수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전해 플랜트의 설계·제조·설치·운영에 관한 인증 및 인허가 통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에서 수전해 플랜트의 안전성·기술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내 수전해 플랜트의 신속한 인허가 및 인증 절차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수소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 설>

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수소인공지능시티의 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등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으며, 도시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도시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통합 운영을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만금 지역에 수소인공지능시티(이하 이 조에서 “수소AI시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소AI시티의 도시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고 AI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는 새만금 지역이 수소AI시티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신 설>

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보
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보
조 또는 용자를 할 수 있다. 다
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스마
트도시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데이터의 수
집 및 활용 또는 AI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
리·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
여 도시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
하거나 AI기반시설을 관리·운
영하는 전문인력 또는 전문인
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도시데이터와
AI기반시설의 종류 및 통합 관
리·운영하는 업무의 범위, 제5
항에 따른 위탁대상 기관 또는
법인, 위탁방법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신 설>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중점산업은 「에너지산업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중점산업으로 본다.

제32조의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지

<신 설>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본다.
제32조의4(에너지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자립도시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④ 도지사는 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5(지역 에너지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신 설>

<신 설>

지 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
지 전환 지원정책의 시행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재생에너지의 직접 전
력거래 특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생산·공급되
는 전기 중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같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
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2조의7(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
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
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
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
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
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하
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는 권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발전사업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또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 중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8(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에서 재

<신 설>

<신 설>

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의9(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

<신 설>

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의10(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

<신 설>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11(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대하여 해당 녹지
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12(수상태양광 산업 육
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
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
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
술 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
원, 전력 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신 설>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 설>

할 수 있다.

제41조의3(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실증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이하 “실증특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역을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2. 지능형 로봇 제조 공장 등 로봇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실증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실증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실증특구 지정·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41조의4(실증특구 내 자율이동
형 로봇의 운행 및 실증 특례)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중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
하여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
스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
는 로봇으로서 실외이동로봇,
무인지게차, 자율운반로봇, 주
차로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로봇(이하 이 조에서 “자율
이동형 로봇”이라 한다)의 연
구·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특구 내 자율이동
형 로봇을 운행 또는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 또
는 실증하려는 자는 「도로교
통법」 제8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
가 지정한 구역에 한하여 보도
또는 도로에서 자율이동형 로
봇을 운행 또는 실증할 수 있
다.

제41조의5(실증특구 내 개인정보
보호 처리 특례) ① 실증특구
에서 지능형 로봇의 인지·판
단 및 인간과의 상호작용 기술

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는 로봇의 자율주행, 객체 인식, 음성 인식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표정, 음성 등 개인의 행동·생체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이루어질 것

2. 연구·개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할 것

3.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출 것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처리

<신 설>

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증특구 내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제41조의6(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 지원 특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능형 로봇 또는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제품(이하 “실증제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매를 권고하거나 구매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보급

<신 설>

<신 설>

확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실증제품의 범위, 우선구매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7(로봇 실증제품의 민간 구매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실증제품의 민간 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도입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로봇산업의 조기 시장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비율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8(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신 설>

의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농업기기, 첨단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산업(이하 “피지컬AI산업”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지컬AI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및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피지컬AI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기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피지컬AI산업의 집적화,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업·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9(피지컬 인공지능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 및 검증

·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피지컬AI산업의 시험·검증·인증·표준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험·검사장비, 전문인력, 품질관리체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센터는 인증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가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안전성·신뢰성 및 현장적합성을 시험·평가하고 검증 또는 인증할 수 있다.

1. AI 기반 이동체 및 자율주행 농기계 등
2. 지능형 로봇 및 스마트제조

<신 설>

설비

3. AI 기반 에너지·환경 제어 시스템

4.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 통합 제어 시스템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융합 제품·서비스

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검증·인증 기준 및 방법, 인증표시, 수수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데이터 제공 및 기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10(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시스템을 검증·인증한 경우

3. 제41조의9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도조례로 정하는 검증·인증 기준 또는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을 수행한 경우

5. 검증데이터의 조작, 허위보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검증·인증의 공정성·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청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11(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

<신 설>

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단위 클러스터(이하 “인공지능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시설

<신 설>

<신 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
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
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
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제41조의12(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
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
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
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
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
적된 전북자치도를 국가 인공
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전북자치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전북자치
도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
다.

제41조의13(인공지능집적단지 지

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신 설>

<신 설>

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14(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15(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이하 “인공지능데이터뱅크”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
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
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
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데
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
로 운영한다.

⑤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
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신 설>

야 한다.

제41조의16(인공지능·에너지 융
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
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
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
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
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
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
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
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
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
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
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

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

<신 설>

<신 설>

<신 설>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1조의17(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 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민 행정업무 및 내부 행정업무에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정성·투명성·보안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18(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41조의19(미래모빌리티 클러스

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북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 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 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국제 품질 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 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 설>

하고 우선하여 검토하고 그 결
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
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전북
자치도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행
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
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 확인, 같
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제 특례 신청 등
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
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
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
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
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
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

<신 설>

<신 설>

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 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
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
통상부장관의 권한

제41조의21(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
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
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
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
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
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자율
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
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2(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
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
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

<신 설>

우 「미래자동차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3(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 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대기·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이하 “녹색융합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및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저감기술과 함께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분진, 도로 재비산먼지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비배기 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계형 실증사업

4.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송·교통 부문 연계형 융합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증

5. 비배기 미세먼지의 발생·이동·노출 특성 분석을 위한 측정·분석·검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6. 대기질 측정·분석·검증을 위한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구축

7. 청정대기산업 및 친환경 자

동차 연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집적화 및 이전 · 입주 지원

8.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종료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 · 재제조 ·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및 관련 기업 · 기관의 이전 · 입주 지원

9.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환경 · 에너지 분야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10. 기타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대기산업과 탄소중립 및 자원 순환형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의24(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에

<신 설>

<신 설>

관한 특례) ① 국가와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 내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첨단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법」 및 관련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25(데이터 활용 및 인력양성 특례) ① 도지사는 로봇 및 AI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영상 및 음성의 원본 데이터(비식별 조치 전 데이터를 말한다)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승인할 수 있

<신 설>

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의2(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공유재산 처분기준의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현물출자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규모 투자유치의 범위 및 요건

2. 국유·공유 재산 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수의계약, 장기대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4. 투자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환매권 행사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는 공공성·투명성 및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 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3(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
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
구 내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원
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기
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
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거
나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 적용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특례의 부여를 산업
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
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신청 및 검토,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